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6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: 2016.12.19
제안자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조형물을 영구조형물로 그 범위를 축소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“조형물 등”을 “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”로 조형물의 범위를 축소 규정함(안 제3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조형물 등”을 “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관리) ① ~ ② (생략) <신설>	제3조(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<u>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	제3조(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 <u>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</u> -- ----- ---.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리) ① ~ ② (생략) 〈신설〉	제3조(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